#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39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임종득・이종배・고동진

김미애 · 김석기 · 최수진

장동혁 · 송석준 · 이종욱

박덕흠 · 정연욱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법률 제 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국가안보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 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려는 때에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에 관한 국방 부장관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제6항·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의견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국가안보 관련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 ①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
	<u>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안보를</u>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
	<u>아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
	<u>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u>
	용허가 신청을 하려는 때에 국
	<u>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u>
	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14일 이

<u>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u>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제6항・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3조 및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의견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